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업무가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

○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범위,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육성, 지정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제6조).

○ 일정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조항(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건축비용의 비율, 설치금액 산정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11조).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심의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제29조)

4. 검토의견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을 개정함(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공포 11.26.시행)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와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로 일원화되었음.

이에 금번 조례전부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시·도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보완·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음.

주요 내용은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안 제3조~제6조), ㉯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안 제7조~제9조), ㉰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금액을 정하고(안 제10조~제11조), ㉱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0조~제30조)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조례 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없음.

다만,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이르기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좀 더 명확하고 일관된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고,

안 제26조제2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재직기간에 한하여 도내에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심위위원의 창작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애매하고 복잡한 조항을 명확한 조항으로 순화하고, 번잡한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붙 임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